

# 월간 세무회계 뉴스 (2016년4월)

## 주제 : 전자(세금)계산서 제도 안내

세무법인 WITHPLUS에서는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회계 및 법률 정보를 종합하여 매월 월간레포트를 통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

### 1. 전자(세금)계산서 시행 안내

#### (1) 전자세금계산서

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 원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모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.

#### (2) 전자계산서

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모든 계산서를 전자계산서로 발행하여야 합니다.

-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(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과세매출 3억 원이상인 개인사업자) : 2015.7.1 부터
- ② 직전년도 과세, 면세매출액이 10억 원이상인 개인사업자 : 2016.1.1 부터

### 2.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및 국세청 전송

전자(세금)계산서는 거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10일까지 거래상대방의 이메일로 송신하는 방식으로 발행하고, 이를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합니다.

이때, 미발급, 지연발급 및 미전송, 지연전송의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### **3. 전자(세금)계산서 제도시행에 따른 세무환경의 변화**

#### **(1) 전자(세금)계산서 발행 및 전송은 익월 10 일까지**

전자(세금)계산서는 거래발생일의 다음달 10 일까지 거래상대방에게 발행하고,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, 실무상 발행 및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짐을 감안할때 거래일의 다음달 10 일을 최종기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

#### **(2) 지연발급,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받는자에게도 부과**

지연발급 가산세 및 미발급 가산세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도 부과됩니다. 따라서 매출회사의 경우 거래상대방의 피해예방을 위해 지연발급 및 미발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, 매입회사의 경우에도 매입(세금)계산서를 기한내에 수수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
#### **(3) 수정(세금)계산서는 수정사유에 따라 재발행방식이 상이함에 유의**

전자발행된 (세금)계산서는 기존의 종이(세금)계산서 수수관행과 달리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며, 취소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수정(세금)계산서를 재발행하여야 합니다.

(수정사유에 따라 재발행방식이 달라지므로, 확인후 수정 및 재발행하여야 합니다.)